

# 업무상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영국 사례

Paul Almond (영국 리딩대학교 법대 교수)  
Ryan Arthur (영국 리딩대학교 법대 박사과정)

## ■ 머리말

2007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업무로 인해 근로자나 기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살인 관련 형법에 의거하여 기업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과실치사(corporate homicide)’라는 특별한 범죄 항목을 도입하였다.<sup>1)</sup>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기업에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sup>2)</sup> 또한 규정의 상대적 중요성과 힘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sup>3)</sup> 세간의 이목

1) 2003년에 호주의 캐피탈 테리토리(Capital Territory)에도 유사한 죄목이 도입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 Sarre and J. Richards(2005), “Responding to Culpable Corporate Behaviour: Current Developments in the Industrial Manslaughter Debate”, *Flinders Journal of Law Reform* 8(1), pp.93-111).

2) Law Commission(1996), Report 237: Legislating the Criminal Code: Involuntary Manslaughter, London: HMSO: 1.10; Home Office(2000), *Reforming the Law of Involuntary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Proposals*, London: Home Office.

3) Home Office(2005), *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을 끌었던 일련의 사고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책임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자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인식되면서 그러한 신뢰는 더욱 낮아졌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이러한 광범위한 인식을 바꾸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안전기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4)</sup> 이 글은 영국에서 기업의 책임을 형벌화하는 경향과 함께, 과거 법의 결합이 어떻게 정계와 법조계의 개혁 욕구를 강화시켰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기업과실치사법의 내용과 실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채택 전망을 간략하게 평가하기로 한다.

## ■ 2007년 ‘기업살인법’ 이전의 법제

‘사용자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이론은 불법행위에 관한 커먼로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하인을 고용한 주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던 19세기의 주인-하인 법에서 발전하였다.<sup>5)</sup> 이 법리의 목적인 보상과 예방은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하인 관계에서 출발하여 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sup>6)</sup>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단, 이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맡은 위험한 업무(근로자가 알고서도 자신의 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일을 맡는 경우)는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다루었다. 미국과 같

4) I. Ayres and J. Braithwaite(1992),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Oxford: University Press; N. Gunningham and R. Johnstone(1999) *Regulating Workplace Safety: Systems and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5) P. Giliker(2010), *Vicarious Liability in Tort: 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

6) R. Gruner(2007),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d Prevention*, New York: Law Journal Press, pp.3-14

은 일부 커먼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대리책임 개념을 기업의 형사상 책임 영역으로 확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영국의 법원은 형사상 책임을 기업에 적용하기 꺼려하였고, 법정 모독이나 공공질서문란죄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의 형사상 책임을 그나마 단계적으로 인정해 왔을 뿐 과실치사나 기타 주요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sup>7)</sup> 그 이유는 형사상 책임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는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sup>8)</sup>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관련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19세기에 도입된 일련의 공장법과 같이 산업안전 규제를 위한 여러 법들이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법들은 형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sup>9)</sup>

주요 형사상 범죄(이론적으로는 과실치사 포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DPP v. Kent(1944), Sussex Contractors R v. ICR Haulage(1944), Moore v. Bresler(1944)의 세 사건으로 책임의 '인정법리(identification doctrine)'가 확립되면서 1944년에 드디어 영국법에서 인정되었다. 인정법리는 임원의 범죄 의사를 기업의 범죄 의사로 인정하는 법리이다. 사용자 대위책임 법리와 달리, 인정법리에서는 해당 기업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며, 임원 및 경영 책임자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의(犯意)(고의 또는 과실)를 지니고 범죄적 결과물을 야기하는 데 있어 '기업으로서' 행동했다면 해당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sup>10)</sup> Bolton v. Graham & Sons(1957) 사건에서 Lord Denning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체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기업은) 자체 행동을 통제하는 뇌와 중추신경이 있다. 또한 중추의 지시에 따라 도구를 잡고 행동하는 손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11)</sup>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7) D. Reilly(1988), 'Murder, Inc.: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for Homicide', *Seton Hall Law Review*, 18/ 2, pp.378-404.

8) J. Gobert, and M. Punch(2003), *Rethinking Corporate Crime*, London: Butterworths.

9) W.G. Carson(1979), 'The Conventionalization of Early Factory Crim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7/1: pp.37-60.

10) P. Almond(2013), *Corporate Manslaughter and Regulatory Reform,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129

11) *per. Denning LJ in HL Bolton(Engineering) Co Ltd v TJ Graham and Sons* [1957] 1 QB 159.

도 범의를 개인으로부터 기업으로 직접 이동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기업체에 돌릴 수 있는 것이다.

## ■ 인정법리의 문제점

20세기 말엽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의 능력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9년 Zeebrugge 페리 사고에 대해 P&O European Ferries를 기소하지 못한 일은 법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여객선이 뱃머리의 문을 연 채로 벨기에 항구를 출발하여 아래 갑판이 물에 잠기면서 갑자기 선박이 전복되어 193명이 사망한 사고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갑판장이 잠이 들어 뱃머리 문을 닫지 않았고 최고 관리자와 선장이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데에 있었지만, 진정한 원인은 제도적인 데에 있었다.<sup>12)</sup> 선장에게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원들에게 고지하는 안전 정책이 미흡하였다. 특히 항구에서 선박을 급하게 돌릴 수밖에 없는, 조직상의 압력이 작용하였다.<sup>13)</sup> 이러한 대규모 사고에 대해 대대적인 공개조사와 영국 사상 최대의 심문이 시작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King's Cross and Piper Alpha 화재, Southall 철도 충돌 사고를 포함한 1980년대 후반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존의 국민 불만을 조직화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형사상 책임 사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행위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확산시키고, 법제도가 오늘날 사회적 제도의 파괴적 잠재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데에

12) Department of Transport(1987), *MV Herald of Free Enterprise: Report of the Court No. 8047(The Sheen Report)*, London: HMSO.

13) C. Wells(2001), *Corporations and Criminal Responsibility(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Gobert and Punch, op. cit. n.8; Department of Transport, op. cit. n.12.

는 모두 기여했다.<sup>14)</sup>

기소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인정법리가 기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사는 기업 위계 내의 개인이 과실치사 행위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P&O 사건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선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고 문제가 되는 특정 결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던 한 임원이 그러한 위험을 맡기 전에 그 위험과 관련하여 무모하게 행동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다. 결국 P&O와 같은 대기업에는 넘을 수 없는 증거 장벽이 있음이 드러났고 기소가 실패하면서 법이 이러한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sup>15)</sup> P&O 사건은 법의 두 가지 중요한 모순점을 드러내었다. 첫째, 기업 범죄는 때로 대규모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난과 책임의 분산에 의해 촉진되며, 이는 바로 범법자가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도와주는 특징들이기도 하다.<sup>16)</sup> 둘째, 법은 법인이 인간과 동일한 행동권을 일부 보유할 수 있도록 단일한, 인간과 같은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이 정체성은 법인이 과실치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의무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sup>17)</sup> 따라서 공개조사를 통해 기업 위계질서의 상위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법은 비난가능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실패는 인정법리의 사용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촉진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친 이 개혁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의 통과로 완결되었다.

피해자들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집중적인 공개 항의는 기업과실치사죄의 입법화를 가능

14) P. Almond and S. Colover(2012), "Communication and Social Regulation: The Criminalization of Work-Related Death",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5), pp.997~1016; J. Gobert (2005) "The Politics of Corporate Manslaughter – The British Experience," *Flinders Journal of Law Reform* 8(1), pp.1~38.

15) Gobert and Punch, op. cit. n.8; Wells, op. cit. n.13.

16) C. Perrow(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Risk Technologies*, London: HarperCollins; J. Reason(1990), *Human Er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D. Vaughan(1999), "The Dark Side of Organizations: Mistake, Misconduct, and Disaste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pp.271~305.

17) S. Tombs and D. Whyte(2007), *Safety Crimes*, Cullompton: Devon.

케 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비극적 사고 후에 피해자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기업의 책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중의 시야에 놓이도록 한다. 대부분이 전문적인 화술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유족들은 그러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전달할 수 있다. 공익단체, 학계, NGO, 노조, 근로자 대표들은 영국 개혁의 주도 세력이었으며, 최근 한국에서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끌었던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광범위한 민영화, 탈규제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다른 이해에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면서까지 위협을 감당하도록 독려되는 분위기가 근로자와 대중에게 어떠한 비용을 초래하는지 드러나게 된다.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주체들이 의미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하며, 법제 개혁은 이러한 대응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sup>19)</sup>

영국 정부의 기업과실치사법 제안은 업무상 사망 사고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사건을 범죄로 다루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법에 의해 기업에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법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가 컸다. 또한 이 대응책은 단지 영국 좌파 정치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혁 이전 수십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향에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은 축소하고 국가 규제 기관의 재원을 삭감하며 규제에 대한 경제적 기준을 수립하는, 탈규제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사와 집행 활동은 줄어들었고, 업무상 재해 및 사망률은 높아졌다.<sup>20)</sup> 그리고 이러한 정책 환경은 특히 기업과실치사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Harcourt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개입이

18) Gobert, op. cit. n.14; L. Snider(1987),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Reform, Regulation, and Corporate Crime”, *Law & Policy* 9(1), pp.37~68.

19) Almond, op. cit. n.10.

20) Almond and Colover, op. cit. n.14.

정당한 영역은 형법 분야, 단지 그뿐이라는 믿음을 조장한다”라고 말한다.<sup>21)</sup> 형사화의 배타적 역학에 대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설명은 범죄 행위의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책임이 부과된 개인에게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sup>22)</sup> 기존의 힘의 관계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러한 관계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상징적 형법의 발전은 정치적 위협에 대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

앞에서 약속한 상황에서 비롯된 법규를 살펴보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간략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논의의 초점을 형법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지난 2세기 동안 단편적인 방식으로 발달되어오다가 ‘근로자의 안전, 보건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SWA)으로 완결된, 이른바 규제 경로와 병존한다. 동법의 제2조와 제3조는 의무에 기반한 범죄행위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도로 근로자의 직장 내 안전보건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러한 의무를 상해의 위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치안판사법원법원에서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일반형사법원에서 무제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감독기관(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위반 기업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사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제한 벌금형이 가능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범죄에 대한 규제적 접근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검찰

21) B. Harcourt(2010), “Neoliberal Penalty: A Brief Genealogy”, *Theoretical Criminology* 14(1), p.74-92, p.80.

22) G. Gray(2009), “The Responsibilization Strategy of Health and Safety: Neo-liberalism and the Reconfigura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Risk”,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3), pp.326-342.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기소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데,<sup>23)</sup> 이는 안전보건 규제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 형식적인 규제 행정 절차와 인지된 기업의 부담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감독기관들의 법집행 자원과 역량이 감소되었다는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제 위반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한 위반 행위는 범의(犯意)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성격상 도덕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책임을 발생시키는 결과보다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또한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사업상 행위이지만 그 결과가 문제 있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구속력과 적용범위 모두에서 흠결이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규제는 형사상 기소보다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된다. 그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보호적 차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회사는 문제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적용된다. 반면에 형사상 기소를 위해서는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며, 따라서 검찰 측은 입증에 위해 더 많은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국내법 또는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의한 형사 재판의 피고인에게는 더 엄격한 절차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sup>24)</sup> 이 때문에, 형사상 기소는 규제상 절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시간과 금전도 더 많이 요구되며, 따라서 행정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집행기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보건 규제는 이어지는 결과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연하며 개방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실치사와 같은 형사상 범법 행위는 그 결과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특정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고 문제되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

23) Tombs and Whyte, op. cit. n.17; Wells, op. cit. n.13; Almond, op. cit. n.10.

24) Gobert, op. cit. n.14.



한 관계는 복잡한 조직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전보건 관련 기소는 여전히 비교적 드물어서, 연간 12만 건의 업무상 재해가 보고되고 그중 120여 건은 사망 사고이지만 매년 약 1,000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의한 기소가 비록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기소는 어떠한 행동이 상당한 비난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규제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뿐이며, 이는 법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 ■ 신설된 범죄 행위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은 심각한 과실치사와 관련된 비난을 해당 기업체에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법제에 도입되었다. 아마도 이전까지 성격상 ‘규제적’으로 간주되었던 분야에 형법을 확대적용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될 것이다.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동법은 민사상 불법행위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현재의 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행위들을 통합한다. 그리고 동법은 기존의 법적 의무에다가, 해당 상황에서 해당 조직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위협을 추가하고자 하였다.<sup>26)</sup> 일반적인 과실 기준이 아니라 특정 의무에 연계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다소 모호했을 법적 표현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sup>27)</sup> 이 범법행위의 핵심 특징은 그 위반이 해당 기업의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 ‘경영실패’의 결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있다. 즉 임원의 행위와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문제의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s.1(4)c에 정의된 상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이란 기

25) Almond, op. cit. n.10: 175/

26)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s1(4)b.

27) J. Gobert(2008),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Modern Law Review* 71(3), pp.413~463.

업의 전반적 운영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 관련 있는 모든 관리 직책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의해 책임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은 ‘한정적 집합(qualified aggregation)’ 메커니즘으로 묘사되는데,<sup>28)</sup> 이는 한 개인이 신체로 비유되는 기업을 지휘하는 정신(directing mind)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인정법리와 달리, 다수 개인들의 실패가 모여 경영실패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진 경영실패가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배심원단은 해당 조직이 관련 안전보건법규를 이행하지 못한 정도, 그러한 불이행과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위험에 대한 상위경영진의 인지 정도, 또는 상위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인지 못한 사실, 해당 조직이 안전보건 요건의 미이행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sup>29)</sup>

동법은 기업 과실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진전으로 볼 수 있다.<sup>30)</sup> Omerod와 Taylor는 “이 법은 기업과실치사라는 죄목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에 내포되어 있는 독특한 과실을 인정한다”라고 지적한다.<sup>31)</sup> 이와 유사하게, Gobert는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 과실의 독특한 성격과 기업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정부의 가장 진지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한다.<sup>32)</sup> 분명히 분위기는 바뀌었다. 2012년에는 63건의 새로운 기업과실치사 소송이 개시되어, 2011년의 45건과 비교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3건의 최근 승소건 -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R v. JMW Farms Ltd, R v. Lion Steel Equipment Ltd. - 에서 잘 드러난다.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는 해자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해자

28) D. Omerod and R. Taylor(2008),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Legislative Comment”, *Criminal Law Review* 8, pp.589–611.

29) Home Office, op. cit. n.3.

30) N. Cavanagh(2011),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n Assessment of the Models of Fault”, *Journal of Criminal Law* 75(5), pp.414–440.

31) Omerod and Taylor, op. cit. n.28: p.590.

32) J. Gobert(2002), “Corporate Killing at Home and Abroad: Reflections on the Government’s Proposals”, *Law Quarterly Review* 118, pp.72–97, 74.

붕괴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2007년 기업과실치사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sup>33)</sup> 배심원단은 이 기업의 업무 체계가 매우 위험하고 안전보건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385,000파운드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두 번째 사건으로, JMW Farms의 한 직원은 지게차의 지게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떨어진 금속 쓰레기통에 맞아 사망하였다. JMW Farms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187,50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다.<sup>34)</sup> 세 번째로, Lion Steel Equipment Ltd.는 회사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하러 갔다가 취약한 지붕채광창 속으로 떨어져 사망한 직원과 관련하여 480,0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sup>35)</sup>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세 건 모두에서 관련 이사에 대한 개인적 책임 대신에 법인 책임을 설정하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기업에 의한 피해에 다시 새롭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많은 경우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우선 순위 및 가치를 결정한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고 있기도 하다.<sup>36)</sup>

Lion Steel 건에서 분명히 드러난 두 번째 문제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상위경영진이라는 용어가 입증에 어려울 수 있어 이 집단의 범위에 대한 개념적 불명확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경영진의 여러 책무들을 구분하기 위한 분명한 경계를 짓기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안전 관련 책무가 하위 직원들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상위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특정한 상황들도 있다. 셋째, 소송의 결과는 전혀 급진적이라 할 수 없다.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와 JMW Farms는 1인 이사가 운영하는 소기업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소

33)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1] All ER (D) 100 (May).

34) *R v JMW Farms*(2012), Belfast Crown Court, NICC 17, unreported([http://www.courtsni.gov.uk/en-GB/Judicial%20Decisions/PublishedByYear/Documents/2012/%5B2012%5D%20NICC%2017/j\\_2012NICC17Final.htm](http://www.courtsni.gov.uk/en-GB/Judicial%20Decisions/PublishedByYear/Documents/2012/%5B2012%5D%20NICC%2017/j_2012NICC17Final.htm)).

35) *R v Lion Steel Equipment Ltd.*(2012), Manchester Crown Court, 20/07/2012, unreported(<http://www.judiciary.gov.uk/Resources/JCO/Documents/Judgments/hhj-gilbart-qc-sentence-remarksr-v-lion-steel.pdf>).

36) Gobert, op. cit. n.27: p.418.

는 인정법리와 이전의 법에 의해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sup>37)</sup> 비록 Lion Steel 이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의 유죄 인정으로 ‘임원’ 요건이 실제로는 심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McClusky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설된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테스트는 안전보건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이미 주장하는 복수의 이사들이 있는 대기업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았다.<sup>38)</sup> 끝으로, 기업과실치사 사건들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Lion Steel 건의 재판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법정에 올리기까지 4년이 걸린 점을 비판하였다. 사건을 구성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수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 ■ 고찰

안전보건 규제에서 형벌화가 지니는 변화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경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기업과실치사법이 이전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결과와는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패턴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실치사법은 주로 상징적인 성격을 지녀, 실제상의 상당한 차이보다는 표면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실치사법이 기업의 태만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는 데’ 성공하려면,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sup>39)</sup>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심각한 소수의 사건들에 집중하고 이 사건들을 특별취급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들의 범죄성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범죄 행위와 ‘단순히 규제적인’ 위반 행위의 구분은, 소수의 범죄적 업무상 사망 사고와 대다수의 비범죄적 업무상 사망 사고의 인위적 이

37) Cavanagh, op. cit. n.30.

38) D. McCluskey(2011), ‘Legal Update: Corporate Manslaughter’, *Law Society Gazette, March*, pp.16~17.

39) Almond, op. cit. n.10: ch.7.

분법을 두고 있는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sup>40)</sup> 끝으로 실행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업과 실치사죄가 아직까지 가장 위법적인 산재 사망 사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죄목을 붙일 만한 모든 경우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충족되어야만, 기업과실치사죄의 상징적이고 태도 변화를 가능케 하는 잠재력이 실현될 것이다.

영국 외에도, 정부가 기업의 형사상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기업과실치사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검토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있다.<sup>41)</sup>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힘과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러한 주제가 등장하여 자리잡을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다른 글로벌 선두 주자들과 겨루는 다국적 기업들의 힘에서 동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싸고 유연한 노동력이 원천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흔재한 특징들로 인해 한국의 근로자들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며 산재 사망률도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sup>42)</sup>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산업안전 문제들의 일부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sup>43)</sup> 한국은 여전히 경제개발을 제1의 목표로 삼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과는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지만,<sup>44)</sup>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역사적 전통은 여러 서유럽 국가들의 특징인 더 자발적인 사회적 코포라티즘과는 대조적으로, “노동력 또는 기타 사

40) F. Haines and A. Hall(2004), “The Law and Order Debate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ustralia and New Zealand* 20(3), pp.263~273.

41) Almond, op. cit. n.10: ch.2.

42) The Financial Times(2010), *Death of Samsung Worker Renews Concerns*, 16/4/2010, [www.ft.com/cms/s/2/525f351c-4978-11df-9060-00144feab49a.html#axzz2YObMf7dG](http://www.ft.com/cms/s/2/525f351c-4978-11df-9060-00144feab49a.html#axzz2YObMf7dG)(accessed on 21/07/13); P. Hämäläinen, K. L. Saarela, and J. Takala(2009), “Global Trends According to Estimated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Fatal Work-related Diseases at Region and Country Level”, *Journal of Safety Research* 40, pp.125~139.

43) D. Paek and N. Hisanaga(2002), “Occupational Health in South Korea”, *Occupational Medicine* 17(3), pp.391~408.

44) C. Lee(2002), “Law and Labour – Management Relations in South Korea”, in S. Cooney(Ed.), *Law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South East Asia*, London: Routledge.

회적 집단들을 지배층이 통제하는 권위구조에 강제적으로 통합”<sup>45)</sup> 하는 경향을 낳았다.<sup>46)</sup> 이러한 문제는 삼성이 반도체칩 생산 시 사용한 유독 화학물질로 인해 발병한 백혈병과 기타 혈액 암에 대해 최근 제기된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한 여성 직원의 암과 그녀가 5년간 서울 근교 공장에서 근무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sup>47)</sup> 이 사안이 특히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결탁으로 산재 인정률이 낮은 데 대한 비난과 삼성 반도체 공장과 업무상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8)</sup>

이러한 결탁 의혹이 법의 정당성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불만과 전국급속노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와 같은 운동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고 충분히 주장될 만하다. 반올림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암과 전자제품 제조 업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전 지구적인 캠페인을 벌였다.<sup>49)</sup> 뒤이어 연관성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삼성이 판정에 불복하고 사건과 해결안의 구체적 내용이 상당 부분 비공개되고 중요한 과정들이 상당히 지체되어<sup>50)</sup> 판결이 상징적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그러한 연관성의 의미도 다소 희석되

45) S. Cooney, T. Lindsey, R. Mitchell and Y. Zhu(2002), “Labour Law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East Asian States: Problems and Issues for Comparative Inquiry”, in S. Cooney(Ed.), *Law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South East Asia*, London: Routledge.

46) F. Deyo(1989), *Beneath the Miracle: Labor Subordination in the New Asian Indust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7) The Washington Times(2012), *South Korea Says Samsung Chip Plant Caused Cancer*, 14/12/2012, [www.washingtontimes.com/news/2012/dec/14/skorea-says-samsung-chip-plant-caused-cancer/](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2/dec/14/skorea-says-samsung-chip-plant-caused-cancer/) (accessed on 21/7/13).

48) The Financial Times(2010), *Death of Samsung Worker Renews Concerns*, 16/4/2010, [www.ft.com/cms/s/2/525f351c-4978-11df-9060-00144feab49a.html#axzz2YObMf7dG](http://www.ft.com/cms/s/2/525f351c-4978-11df-9060-00144feab49a.html#axzz2YObMf7dG)(accessed on 21/07/13).

49) TUC Korea(2011), *Leukaemia Linked to Semiconductor Work, Risks*, 05/12, 02/07/2011, [www.tuc.org.uk/workplace/tuc-19727-f0.cfm#tuc-19727-21](http://www.tuc.org.uk/workplace/tuc-19727-f0.cfm#tuc-19727-21)(accessed on 21/7/13).

50) The Korea Herald(2011), *Court Orders Compensation for Samsung Employees who Died of Leukaemia*, 23/6/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0623000960>(accessed on 07/08/2013).

었다. 더 넓게는, 기업과실치사가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 기업 범죄가 처리되는 방식에 의하면, 근로자 사망건은 실질적 사회악의 형태가 아니라 주로 적절한 보호 기준의 기술적 위반으로 분류되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진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범죄화가 반드시 업무상 사망 및 상해율을 줄이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아니지만, 규제적 개입의 명백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일련의 공공 가치들에 규제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더욱 민주적으로 구성된 규제 제도를 지향하는 건설적인 움직임의 일부로서 가치를 지닌다.<sup>51)</sup> 사회적 시민권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해당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탄탄한 규제 제도가 존재할 때만 대중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

## ■ 맺음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형사상 범죄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와 더욱 심오한 사회적 가치의 연관성을 조명함으로써 규제의 이유에 대한 강력한 공적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형사상 범죄의 적용에는 대중이 마땅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이행이 왜 옳은지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규제 제도의 정당성과 그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증진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이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위반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모든 기업체는 타인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정당성 측면의 성과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한 목표들이 신설 법규의 형태, 내용 및 적용방식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기업과실치사라는 형사상 죄목을 개발함으로써 어

51) Almond, op. cit. n.10.

는 정도 가치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규제적 산업안전보건법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근로자와 국민이 그러한 법제에 의미 있게 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1**